

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

2026. 07. 16.

I. 지시사항 및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1 지시사항 추진상황

- ◆ 지시사항은 총 127건(주관과제 5건, 협조과제 12건, 훈시사항 110건) 하달
※ 추진과제(주관+협조) 총 17건 중 13건 이행, 완료율 76.5%
- ◆ 7월 기준, 지시사항 **4건 정상추진 중**(1개월내 1건, 6개월내 3건 완료 목표)

※ 완료과제 제외

연번	지시사항	추진현황 및 향후계획	완료시기
1	【 주 관 】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실태 지속 점검 ('26.5월)	○(현황) '공공실태점검단' 발족, 중앙·지방·교육청 개인 정보 보호실태 자체점검 추진('26.6.4.~) ○(계획) 기관별 점검결과 분석 및 개인정보위-부처 합동 점검(7~8월), 미흡사항 조치안내 및 이행점검(9월~), 점검결과 종합 분석 및 개선계획 마련(~12월)	'26.12월
2	【 주 관 】 각 부처 개인정보 보호·관리 전담인력 보강 ('26.5월)	○(현황) 공공기관 현황조사('26.2.)* 토대 최소 인력기준 마련(5월), 인력확충 관련 관계부처 협조 요청(6월) * 공공부문(653개) 기관 시스템 및 인력·예산 현황 조사 ○(계획) 유관 부처 본격 협의(7~8월) 통해 개인정보 전담인력 배정, 예산 확보 추진	'26.12월
3	AI 기술을 활용한 조선소 안전 관리('26.5월, 협조)	○(현황) 관계부처·기업 회의*(6.5) 및 향후 계획 협의 * 산업부(주관), 노동부, 개인정보위, 과기정통부, 조선 3사 등 ○(계획) 근로자 개인정보 침해 요인 검토 등 협조	'26.7월
4	AI 기반의 행정서비스 전달 ('25.6월, 협조)	○(현황) 개인정보위 심의·의결 등으로 규제리스크 해소 ○(계획) 공익목적 AI 개발 시 원본활용이 가능한 'AI 원본활용 특례' 도입(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)	'26.8월

※ 지시사항 중 추진완료 과제 주요 성과

- ① (과징금 부과 기준 매출액)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
공포(3.10.) 및 과징금 산정 매출액 기준 강화*(시행령 개정, 5.19.)

* (기존) 3년 평균 매출액 → (개선) **3년 평균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**

- ② (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철저) 2차 피해 예방조치 촉구*('25.12.) 및 개인
정보 유출·침해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 엄정 조사·처분**(6.10.)

* 유출사실 보완통지, 탈퇴절차 개선 등 ** 과징금 6,246억 8,100만원, 과태료 1,680만원 부과

2 외부 반복 지적사항 추진상황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① 국정감사 반복 지적사항				
1	대규모 유출사고 시 과징금 가중 강화 등 필요	2023 2025	○(현황) 유출사고에 따른 과징금·과태료 제도 개선 - 일률적용이 아닌 비례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과징금·과태료 부과기준 개정('23.9.) - 징벌적 과징금 도입('26.3, 법 개정), 중대 위반 시 과징금 가중기준 마련(시행령 개정 중, '26.5.~) ○(계획) 징벌적 과징금 시행('26.9.)에 맞추어 사고 억지를 위한 과징금 체계 세부 개편 검토	'26.9월
2	중앙·지방·교육청 등 공공 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실태 파악 및 보강 필요	2023 2025	○(현황)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·예산 현황 조사('26.2.),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 추진 ○(계획) 행안부·재경부·기획처 등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전담인력·예산 확충 추진	'26.12월
3	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 터링 강화 및 다크웹 포함 신속 탐지체계 구축	2021 2022 2025	○(현황) 개인정보 유출이력을 알려주는 '털린 내 정보 찾기' 서비스 운영('21.11.~), 불법유통 탐지·삭제 서비스 고도화*('26.5.) * 텍스트 외 이미지도 삭제, 다크웹까지 탐지범위 확대 ○(계획) 불법유통 처벌근거 신설 및 범정부 협업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추진	'26.8월
② 언론 반복 지적사항				
4	자율주행 원본영상 활용 규제가 산업발전 장애물로 작용	2024 2026	○(현황)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신청 건별로 원본활용 특례 부여(안전성 조치 등 전제) ○(계획) 공익·사회적 목적의 AI 기술개발 시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는 'AI 원본활용 특례' 도입	'26.8월
5	과징금 수입이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활용될 필요	2025 2026	○(현황) '공익신고장려기금'에 개인정보 피해 구제 포함 협의 중(기획처) ○(계획) '통합기금' 마련 위한 관계부처 협업 지속, 사고기업이 피해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'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' 도입 검토	'26.12월
6	급증하는 개인정보 사고 조사대응 위한 인력 부족	2025 2026	○(현황) 위원회 조사인력은 '22~'25년 동결(31명)이었으며, '25.12월 조사 인력 확대(현 37명) ※ 유출건수: ('24년) 1,377만건 → ('25년) 1억 354만건 ○(계획) 개인정보 조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추진 ※ 정기직제 요구('26.3.), '26년 하반기 수시직제 요구 예정	'26.12월

연번	지적사항	연도	현황 및 조치계획	완료시기
③ 민원 반복 제기사항				
7	CCTV의 정당한 이해관계자 열람 허용	2025 2026	○(현황) 물품 파손·분실 등 사유로 CCTV 영상 열람 요구 시 경찰 입회 또는 제3자 비식별 처리 등의 절차로 인해 불편 발생 ○(계획) 정당한 이해관계자(사건사고 피해자, 피해자 가족 등)에게 신속한 CCTV 영상 열람 허용 및 보존요구 등이 가능토록 입법 추진	'26.12월
8	회원 탈퇴 절차의 복잡성 개선 요청	2025 2026	○(현황) 회원탈퇴 지원 서비스(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) 연계 지원, 중대사안은 개선 촉구* * 쿠팡 대상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('25.12.) ○(계획) 다크패턴 모니터링 등 회원 탈퇴 방해 현황 점검,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민(정보주체) 의사를 대리하는 신속탈퇴 지원 추진	'26.12월
④ 기 타 (감사원·시민단체 등 지적사항)				
9	(시민단체·변호사협회) 유출사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필요	2025 2026	○(현황) 소액 피해 사건은 소요 비용 대비 낮은 배상액, 입증 애로 등으로 소송제도 비활성화 ○(계획) 실질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 전환 및 집단 소송 제도(법무부 주관) 도입 지원	'26.12월
10	(시민단체)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으로 본인확인하는 제도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	2025 2026	○(현황) 시범운영 중인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에 개선권고* 의결('26.5.) * 생체인식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 필요 등 ○(계획) 대체 인증수단 마련, 민감정보 처리근거 명확화 등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철저	'26.8월
11	(감사원) 공공시스템 해킹 등 대비 안전조치 강화 및 접근권한 현행화, 접속기록 점검 필요	2026	○(현황) 접근권한 현행화 및 DB 접속기록 점검 여부를 반영한 '26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 수립('26.4.) ○(계획)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실태 점검 및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대상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·모의해킹 의무화* 추진 *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(고시)」 개정	'26.12월

Ⅱ. 상반기 주요 성과

1 확실히하고 엄정한 제재 확립 (대통령 지시사항)

- **(엄정 처분)**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,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*로 기업의 책임성 제고

* (과징금 부과규모) '24년 612억원 → '25년 1,678억원 → '26년 6,804억원

(주요 처분) 쿠팡(6,247억), 명품3사(360억), 롯데카드(96억), 듀오(12억), 한국연구재단(7억)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▶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신속·면밀 조사 → 과징금 6,247억원 부과('26.6.)

- **(실효적 제재 설계)** 징벌적 과징금 도입*, 과징금 매출액 산정기준 강화**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

* (기존) 매출액의 최대 3% → (개선) 중대·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%

** (기존) 3년 평균 매출액 → (개선) 3년 평균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중 큰 금액

- **(철저한 사후 점검)** 시정명령, 시정권고 등 처분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*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·관리 개선

* '25년 하반기 처분 중 이행기간 도래한 93개 기업·기관의 222개 시정조치 이행점검

2 예방중심 보호 체계로 전환 추진 (국정과제 25-3)

- **(선제적 예방점검·관리)**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 분야 및 상조회사, 금융 등 고위험 민간 분야 개인정보 사전실태점검 실시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▶ 공공분야 실태점검 확대 : ('25.) 38개 기관 → ('26.) 2,300여 개 기관 점검 중

- **(예방제도 도입)**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 인증제도 전면 개편*, 보호투자 인센티브 근거 마련 등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**

* 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」 발표('26.4., 경제관계장관회의)

** 「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」 발표('26.5., 국무회의)

- **(국민권리 직접 보호)** 아동·청소년 시절 게시한 개인정보(지우개 서비스) 및 노출·불법유통 게시물 삭제 지원*, 개인정보 사칭 등 권리침해 대응** 강화

* ('26년 上) 지우개 서비스 총 8,653건, 노출·불법유통 게시물 총 82,951건 삭제

** ▲사칭계정 삭제·차단을 위한 핫라인 게시('26.5.~) ▲아태지역 감독기구 간 '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' 출범 주도('26.6.) ▲개인정보 불법유통 범죄자 검거 협력

3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[국정과제 25-4]

- **(기반 조성)** 가명처리 효율화*를 위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전면 개정('26.3.),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** 가동('26.3.~)

* 표준화된 위험도 기준 마련, 구비서류 간소화(24종 → 위험도에 따라 3~10종으로 대폭 축소)

** (사례) 과기정통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평가위원·연구자 AI 추천 서비스 컨설팅

〈 주요 우수사례 〉

- ▶ '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(전문기관이 가명 처리, 가명정보 제공 전 과정 지원)' 도입('26.5.) 이후 가명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(기존 126일 → '26년 30일 이내)

- **(정책 지원)** 신기술·신서비스 출시,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

√ **사전적정성 검토제**(신기술·신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적법한 보호법 적용방안 컨설팅)

- 사례 : AI 에이전트가 회원 서비스 이용내역을 안전하게 맞춤답변에 활용토록 컨설팅

√ **비조치의견서**(가명정보 처리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"행정조치 대상 아님" 통지)

- 사례 : 의료기관 환자데이터 원외 위탁 가명처리 관련 행정조치 대상 아님 통지

- **(마이데이터 확산)** 국민이 마이데이터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정보 직접전송(다운로드)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*

* (기존) 통신·의료·에너지 3종만 가능 → (개선) 산업 분야 관계없이 전 분야 가능

◇ '26년 상반기, 강력한 사고 억지효과를 부여하는 제재 강화와 함께 예방중심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사전적·자발적 보호체계로 전환 추진

◇ '26년 하반기는, 예방 제도 성공적 안착으로 국민권리 보장 실질화, AX 혁신 지원 및 데이터 안전활용 체계 구축

Ⅲ. 핵심 추진과제

<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>

AI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하는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안착

4대 역점과제

1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

- ☑ 예방점검으로 리스크 해소
- ☑ 예방투자 상응 인센티브 설계
- ☑ 중소·영세 사업자 안심 지원
- ☑ 공공부문 보호제도 강화

2 AX혁신 위한 안전 활용체계 구축

- ☑ 원본 안전활용 도입
- ☑ AX 종합지원 가동
- ☑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

3 국민 개인정보 권익 증진

- ☑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
- ☑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
- ☑ 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

4 신속한 조사·처분 및 실효적 제재

- ☑ 조사·처분 신속 처리
- ☑ 제재 실효성 강화
- ☑ 기술 역량 강화

개혁 · AI시대 규율 전환 · 사망자 정보 규제 합리화 · 마이데이터 통한 편익 증진

지방 · 데이터 안전활용 인프라 확산 · 지방 청년 인재양성, 청년 스타트업 지원

정상화 · 유출신고의 역설 해소 · 증거 은닉·폐기 제재 · 불법유통 탐지·대응 강화

기타현안 · 국민 생활 밀접 주요 조사 · AX 기반 업무 효율화

정책 여건

대규모 개인정보
유출 사고 지속

AX 확산으로
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

AI 해킹 등 개인정보
침해위험 상시화

1 역점 과제

①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 (국정과제 25-1, 25-3)

- (예방점검으로 리스크 해소) 사전실태점검 통해 위험요인 사전 해소
 - 고객센터·에듀테크·요양병원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사고 시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·민감정보 보유 분야 대상 정기·수시 실태점검 실시
 - ※ 클라우드 협업 도구,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 분야도 개인정보 위협요인 사전파악
 - “공공실태점검단” 중심 각 부처, 소속·산하기관 실태점검 지원·감독
 - 각 부처는 본부 외 소속·산하 기관까지 관리·점검하고, 개인정보위는 실태점검 지원으로 지속적 관리·점검체계 확립
 - 주요 공공 시스템(387개) 중 자체점검 결과 미흡 시스템 합동점검, 주민등록번호 5천만 건 이상 보유 대민시스템(11종) 등은 집중 관리



- (예방투자 상응 인센티브 설계) 보호노력 연계 과징금 부과, 평가 활성화
 - 예방투자 및 유출사고 회복력(레질리언스)을 반영한 과징금 제도 시행('26.9.)
 - 법상 의무를 뛰어넘는 실질적 예방투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
 - 유출 사고 신속 탐지·차단,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 등 보다 안전한 보호체계로의 복원 노력 수준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

<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전주기별 대응 노력에 상응한 과징금 감경 체계(예시) >

사전예방 투자	사고 대응	신속 회복
• 보안투자 비율·지속성 우수 • CPO 전문성 등 관리 우수 • 취약점 신고·조치·공개 등	• 사고 대응 체계 구축 • 이상징후 신속 탐지 • 신속 신고·통지 등	• 백업 복구, 시스템 개선 •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등 •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 등으로 사전예방 체계로의 전환 불가피” (‘26.3.23, 국회 토론회)
- ▶ “개인정보위에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및 현황 등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” (‘26.4.9, 개인정보·정보보호 산업 발전을 위한 관계기업 현장방문 간담회)

- 평가·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관심 제고, 보호 실천 내재화
 - 개인정보 영향평가* 민간 활성화를 위한 평가 기준·방법 재설계('26.12.)
 - * 주요 시스템 도입·개편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, 개선방안 도출 등
 - 다양한 업종별 평가·심사* 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표 포함 추진
 - * (사례) 문체부 관광호텔업 등급평가 가점항목에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 반영 (7.1. 시행)
 - 공공앱·프랜차이즈 등 국민생활 밀접 기업·기관 52개 처리방침 평가

□ **(중소·영세 안심 지원)** 보호여력이 부족한 중소·영세 기업 직접 지원

- 사고 발생 시 신속 기술지원, 경미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반복 시 가중하는 중소·영세 기업 처분성 경고제 도입('26.9.)
- 보호체계 자가점검 도구 개발 추진 및 중소·영세 기업 우선 배포
-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현장 진단 후 종합적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

□ **(공공부문 보호제도 강화)** 대규모·민감정보를 보유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·관리 체계 강화

-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(387개) 대상 의무 확대

제 도	현 행	개 선
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(ISMS-P)	자율 인증	정부24, 국민신문고 등 주요 시스템(81개)부터 단계적 의무화('27.7.~)
취약점 점검, 모의해킹	시행 권장	연 1회 이상 실시 의무화('27.1.~)
전문 CPO 지정·신고	신고의무 無	개인정보 보호 경력 등 자격요건 갖춘 전문CPO 신고 의무화('26.9.)

-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인력·예산* 확보 지원, 처우개선**과 병행하여 업무해태, 고의·중과실 유출 등에는 징계권고·이행점검으로 책임성 강화

* 취약점 점검, 접속기록 관리,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 등 안전조치 예산

** 특수업무수당, 근평 등 가점 부여 및 장기근속 우대방안 등

〈 현장 목소리 〉

- ▶ "여러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보호인증 취득 등에 예산 부담이 큼", "수많은 시스템기관 관리 감안, 인력 충원 필요" ('26.1, 공공분야 현장간담회 / '26.4,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)
- ▶ "기관 인센티브 외 실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" ('26.1.13, 공공분야 현장간담회)

②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구축 (국정과제 25-5)

- (일본 안전활용 도입)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 실현
 - 공익·사회적 목적의 AI 기술 개발 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「AI 원본활용 특례*」 도입
 - * (절차) 신청·접수 → 현장조사, 위험요인 평가 → 전문위/개인정보위 심의·의결 → 사후관리
 - 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상임위 의결('26.5.14.)
 - ‘에이전틱 AI’, ‘공공 AX’ 등 분야별 안내서 발간, 현장의 안전처리 지원

< 현장 목소리 >

- ▶ “자율주행 AI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, 신속 법제 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필요” ('26.1.23, 자율주행·로봇산업 발전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)

- (AX 종합지원 가동) 사안별 최적수단 매칭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
 - AI 개발·운영 과정의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혁신지원 제도를 통합한 「^{가칭}AX 안심 지원체계」 구축
- < 「AX 안심 지원」 체계도 >



- 적극 법령해석, 사전적정성 검토, 비조치 의견서 등 개인정보위 제도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한 공공·민간 AX 지원

[소방청] '119구급 현장지원 시스템' AI 기반 고도화 지원(사전적정성 검토)

- ▶ 구급대원의 수기 작성, 판단에 의존하는 응급환자 분류·기록 업무를 AI로 전환
→ 환자 민감정보를 보호하면서 구급인력 부족 문제 해결, 응급환자 적정 병원 이송

- (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) 국외이전수단 확대 및 지역별·국가별 전략적 협력
 - 개인정보위 마련 표준계약서(SCC), 개인정보위 승인을 받은 기업내부 규정(BCR) 등에 따른 국외이전 허용 및 국외이전 영향평가제* 신설
 - * 대규모·민감정보 이전, 보호수준 우려 국가로의 개인정보 이전 시 평가
 - 아태지역 등 산업계 수요 토대 데이터 교류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이전체계를 마련해 기업활동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

③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권익 증진 (국정과제 25-1, 25-5)

- **(합당한 보상체계 마련)**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추진
 - 유출 발생 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원칙을 명시, 기업이 기술현황 등 유출책임에 대한 전반적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 강화
 - 유출 기업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수입 등이 국민 권리구제,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통합기금 마련(기획처 협조)
- **(국민불편 원스톱 해결)** 업무체계 개편, AX로 국민 권리행사 효과적 지원
 - AX 기반 개인정보 상담·신고 처리 및 대국민 피해구제, 권리회복 지원 등 위한 개인정보 침해 종합지원 서비스 설계('26.下) 및 구축('27)


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(열람·정지 등)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대국민 지원 서비스 제공
 - 국민 개인정보 권익을 증진하고, 권리구제를 종합 집행하는 체계 마련
 - **(신기술 프라이버시 침해 예방)** 침해위험을 구체화하여, 선제적으로 대응
 - 일상생활 밀접 분야 이용자수가 많은 주요 앱(300개 내외) 대상으로 다크패턴(눈속임 설계) 현황 분석
 - 탈퇴 방해, 선택동의 강요, 지속·반복적 동의 요구, 불명확한 문구 통한 동의 획득 등 주요 다크패턴 유형 분류 및 현실적 규율체계 마련
 - 개인정보 생애 전주기 프라이버시 침해방지 등 연구개발(R&D) 추진(신규)
 - 개인정보 비식별화, 추론방지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(PET) 연구개발
- ※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'AI 기반 로그 통합분석 기술' 연구 추진 (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R&D 사업, 과기정통부 협조)

4 신속한 조사·처분 및 실효적 제재 (국정과제 25-1)

- **(조사·처분 신속 처리)** 중요 사건(100만건 이상 유출 등) 중심 신속한 조사·처분으로,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 피해구제 지원
 - 중요 사건의 경우 전담 조사단(TF)을 구성하여 신속 처분, 국민 손해 배상청구 등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
 - ※ 급증하는 사건 신속 조사·처분을 위한 조사 수행인력 현실화 필요
 - 처분례가 확립된 소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절차 도입
 - ※ (사례) 소액 과징금(예: 1억원)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위 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의 등
- **(제재 실효성 강화)**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제재 및 조사 강제력 강화
 - 중대·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(매출액의 최대 10%), 유출신고·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불이행 시 과징금 가중
 - 조사 비협조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증거보전명령, 위반 확정 전 침해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긴급 보호조치 명령 등 조사력 강화 제도 마련
 - 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안 발의('26.2.), 현재 정무위 계류 중
- **(기술 역량 강화)** AI 해킹 등 신규 위협 대응 과학적 조사체계 구축
 - 랜섬웨어 등 복잡한 증거 확보·분석이 가능토록 포렌식랩 기능 고도화
 - AI·신기술 침해위험 적시 대응을 위한 기술분석센터 구축('26.12.)

2 개혁 과제

1 AI시대 위험기반·원칙중심 규율 체계로 전환

- **(개인정보 규제 개혁)** AI 시대 필수 요소인 데이터(개인정보) 활용 혁신 방안을 수립·이행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적 사업에 적극 동참
 -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개인정보 적법처리 근거 확대 추진
 - ※ <예시> (현행) 민간 '공익' 목적 데이터 활용 제약 ⇒ (개선) 공익 목적(범죄대응, 재난방지 등) 활용
 - (현행) 사고 CCTV 열람 등 정당한 사유에도 데이터 처리 불가 ⇒ (개선) 제3자 정당한 이익 근거
 - 스마트글라스, 로봇 등 현실 데이터 환경*을 반영한 처리 및 보호 원칙 수립
 - * 카메라·마이크 등 주변을 실시간 인식, 주변인 데이터 수집·이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반면, 오남용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도 존재함에 따라 균형적 고려 필요

- **(규율체계 차등화)** 일률적 규율체계 재검토, AI 환경 반영 유연 적용
 - 개인정보의 성격·민감도, 처리결과 예측가능성 등 중요도·파급력을 고려하여 위험도 기반으로 차등적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추진
 - 에이전틱 AI의 자율성을 고려한 책임성 확보 방안, 피지컬 AI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위험성 통제 방안 등 기술별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

② 사망자 정보 규제 합리화 (국정과제 25-2)

- **(재난상황 이용)** 사고 발생 시마다 법령해석을 거치는 현행 체계를 탈피하여,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의 사망자 정보 이용기준* 수립
 - * 재난상황 시 사망자·유족의 개인정보 처리·보호 지원 안내서 발간(~'26.10.)
- **(사자(死者) 정보 이용 보호)** 생전 의사표시 등에 기반한 유족의 사망자 계정 접근 허용 및 사망자·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 방안 마련
 - ※ 현행법 상 살아있는 개인의 정보만 개인정보로 규정하므로, 사망자 정보는 법 적용 불확실성 존재

③ 마이데이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(국정과제 25-4)

- **(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출시)**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 국민(정보주체)이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현
 - 의료·통신·에너지 등 각 분야를 융·복합한 혁신 서비스* 출시('26.12)
- * < 국민체감 혁신 서비스(예시) >

 - (의료) 병원 진료·검사내역 파편화 ⇒ 진료내역 활용을 통한 비대면 진료 고도화, 맞춤형 식단 서비스
 - (통신) 통신요금의 과다여부 확인 애로 ⇒ 실제 이용패턴을 기반으로 맞춤형 요금제 추천
 - (에너지) 청년·주부·고령자 등은 금융이력 부족 ⇒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
- **(마이데이터 주권 실현 구체화)** 개인정보 활용 수익의 일정 부분을 소유자인 정보주체에게 환원 검토, 새로운 차원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
 - 마이데이터 제도와 연계한 이익공유(환원) 방안*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
 - * (사례) 주민, 기업 등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원본 및 빅데이터(의료, 에너지 데이터 등)를 연구, AI 구축 등에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, 일부를 참여자에게 환원하는 모델
 - 돌봄·응급이송 등 사회난제 해결 위한 국민참여 리빙랩 방식 실증 등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효과 확산

3 지방주도 성장 과제

① 데이터 안전활용 인프라 확산으로 지역혁신 촉진 (국정과제 25-5)

- **(지방 주도 데이터 산업 육성)**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,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국가역점사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도 혁신

- 목적 제한 완화로 가명·결합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, 재사용 허용

<현행> 특정 개별 연구에 활용 후 즉시 파기

<개선> 다양한 연구에 재사용 가능한 데이터셋 사전 구축 (안전환경에서 보관)

- 지역 시범사업 先적용(예: 광주 의료데이터) 후 단계적 제도화 추진

- **(가명제도 거점 확대)** 지역적 한계가 없는 AX를 위해 지역 플랫폼 확대

- 각 지역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가명처리 서비스 대상을 확대* 하고, 가명정보 결합기능도 부여하여 데이터 활용 거점으로 도약

* 텍스트 뿐만 아니라 영상·음성·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가명처리 인프라 확보

- 거점별 이노베이션 존 간 데이터 연계(클라우드화)로 자유로운 개인 정보 분석·활용 수행, 데이터 결합·분석까지 가능토록 연계 확대 추진

구 분	기 능	개수	지 역
활용 지원센터	가명 처리·활용 지원	7개	서울·인천·원주·대전·전주·대구·부산
결합 전문기관	가명정보 간 결합 수행	18개	서울·경기·강원·대전·전북·대구·경북·전남
이노베이션 존	유연한 개인정보 활용	8개	서울·경기·춘천·대전·광주·대구·김천

② 지방 청년 인재양성, 청년 스타트업 지원

- **(개인정보 전문인력 양성)** 지역현장에서 역할가능한 청년 인력 양성

- ▶ **(노동시장) AI의 노동 대체로 인해 IT 전공 청년들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***

* 2030 상용직 19.7만명 감소('26. 데이터처), IT·통신업계 신입채용 73% 감소('26. 채용플랫폼 캐치)

- ▶ **(개인정보·정보보호) AI 해킹 위협 등으로 개인정보·정보보호 인력수요는 상승세***

* △전문 CPO 지정 의무 대상 기관(600여개) 및 주요 공공시스템(380여개) 담당인력 필요

△민간 개인정보 보호 어려움 1위 '인력 부족'(40.3%) ('25 개인정보보호·활용조사)

△정보보호 산업 신규채용자 6,545명('23) → 7,824명('25) ('25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)

- ➔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IT 전공 청년들을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인력으로 양성, 청년 취업난 해소 및 개인정보 보호 기반 강화의 일거양득 효과 도모

- 지방소재 대학 등 IT 전공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법령·기술을 집중교육한 후,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활동에 연계 추진
 - 맞춤형교육과 일 경험 제공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성, 커리어 확보
 - 전문성 보증을 위한 개인정보 분야 공인 민간자격·국가 자격 도입 검토
 - ※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의 기능 분류·설계를 참고하여 필수 역량 등 도출
- **(청년기업 등 컨설팅)** 접근성 낮은 지역 중심으로 현장맞춤 지원
-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투자여력이 낮은 청년 스타트업 대상 개인정보 법령·기술 컨설팅
 - 권역별 처리자 교육(20회), 전국 초·중·고 및 노령층 등 피해예방 교육(250회) 실시, 공공기관 보호수준 미흡 권역(3개 지역) 맞춤형 컨설팅

4 국가정상화 과제

①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역설(성실신고 기업이 더 큰 부담) 해소

- **(신고 유도)** 미신고 적발 시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도록, 장기간 해태·의도적 방치 시 과징금 가중, 신고·조기 대응에는 인센티브 부여(~'26.9)
- **(사고적발 강화)** 온라인 상 노출 및 불법유통 개인정보 탐지 등 강화

② 증거 은닉·폐기 시 제재 및 신고포상금 도입

- **(제재규정 신설)** 개인정보 유출사고, 권리침해 사항을 은폐·축소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닉·폐기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신설
- **(신고포상금 도입)** 은닉·폐기 행위를 신고하여 위법행위 처분에 도움이 된 자에게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

③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·대응 강화

- **(형벌규정 신설)** ‘누구든지’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구매·제공·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형벌규정(5년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 벌금) 신설
- **(수사 협업 근거 마련)** 개인정보위의 불법유통 관련 정보 수집·분석 및 탐지·삭제·차단 근거 마련,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
 - ※ 개인정보 불법유통 탐지체계를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로 확대·운영('26.6~)

5 기타 현안과제

① 국민 생활 밀접 주요 조사 (국정과제 25-1)

□ (엄정 조사·처분) 플랫폼·유통·공공 등 국민생활 중요 사건 연내 마무리

【유출신고 현황】

▶ 신고건수 : ('24) 307 → ('25) 447 → ('26.上) 432 ('25년 연간 신고건수 수준 근접)

▶ 주요 사건 :

- ① (플랫폼) 티빙 개인정보 저장 DB 비인가 접근, YES24 랜섬웨어 공격으로 유출
- ② (유통) GS리테일 해킹 공격, CU 편의점택배 서비스 시스템 비인가 접근 등 유출
- ③ (게임·교육) 넷마블 포털 DB 해킹, 교원 등 8개사 비정상적 트래픽 발생 등 유출
- ④ (공공기관) '따릉이' 회원 정보 유출, 실종·입양 아동 관련 개인정보 유출(분실)

□ (적극적 소송 대응) 자체 송무팀을 운영 중*이나, 소송 증가·대형화, 쟁점 복잡화에 체계적·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보강 노력 중

* 개인정보 관련 소송은 신생분야로서 판례·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, 적극 응소로 과징금 등 처분 이행력 제고, 행정비용 낭비 최소화 추진

【소송 현황】

▶ 계류 중 쟁송 건수 : 63건 ('26.6월말 기준)

▶ 진행중인 주요 소송 :

- 1심 : (SK텔레콤) 과징금 1,348억 취소소송, (우리카드) 과징금 134억 등 취소소송
- 2심 : (구글·메타) 과징금 1,000억 취소소송, (삼성전자) 과징금 8.7억 취소소송

▶ 주요 승소 사건 :

- ① (카카오) 과징금 151억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('26.1.20.)
- ② (디지털대성) 과징금 6.1.억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·확정('26.1.15.)
- ③ (골프존) 과징금 78억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승소·확정('26.2.27.)

② AX 기반 업무 효율화

□ (업무체계 AI 전환) 바이브코딩 학습조직('개인정보 AX 엔진룸'), PoC 경진대회 등 개인정보위 직원 AI 역량 강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

※ 개인정보 법령·정책 AI 컨설턴트, 처리방침 작성 지원, 지시사항 추진현황 관리 등

□ (AI 에이전트 사고분석) 조사 지원용 AI 자체개발, 파일럿 테스트 수행

- 유출사고 분석 쉼주기(자료분석→유출경위 도출→보고서 작성) 자동화 체계를 자체적으로 개발·실증하여, 급증하는 사고에 신속 대응

※ 고성능 추론 기반 로그 분석, 다양한 확장자 지원 가능한 제출자료 분석 에이전트 등